

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2016·3·16 조례 제1215호
일부개정 2019·3·8 조례 제1469호
일부개정 2020·10·7 조례 제1632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1·6·25 조례 제1716호
(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
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·10·7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·10·7>

1. “청소년시설”이란 청소년활동, 청소년지원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수련관”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활동, 생활체육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.
3. “청소년문화의집”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.
4. “청소년상담복지센터”란 청소년의 정신건강, 학습, 진로, 대인관계,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,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·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
5. “청소년쉼터”란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·학업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
6. “교육협력지원센터”란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(진학) 지도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전담하는 교육관련 기구를 말한다.

제3조(설립 및 명칭)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, 명칭은 이천시 청소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20·10·7>

제4조(소재지)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5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20·10·7>

1.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
2. 청소년보호·복지에 관한 사업
3.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한 별표 1의 청소년시설 및 교육관련 기구의 운영·관리
4.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
5. 그 밖에 청소년육성·보호·복지를 위하여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승인한 사업

제7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의 운영
7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8. 예산과 회계
9. 정관의 변경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·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·

10·7>

제9조(임원 등) ① 재단에는 이사장·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 <개정 2019·3·8>

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이사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<단서신설 2020·10·7>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이사회의 소집·의결정족수·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1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 <개정 2019·3·8>

제12조(비밀 준수)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사업계획과 예산·결산) ①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. <개정 2019·3·8>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·10·7>

제15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보고·검사·지도 감독)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·회계·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공무원의 파견)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② 재단의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파견 공무원에게는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규정)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②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이나 운영 등에 대하여 재 위탁할 수 없다.

제19조(잔여재산의 귀속)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.

제20조(권한의 위탁) 시장은 재단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, 「이천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·6·25>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3·8 조례 제1469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0·10·7 조례 제163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·6·25 조례 제1716호,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

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0. 10. 7>

청소년시설 및 교육관련 기구

(제6조 관련)

명 칭	위 치
1. 서희청소년문화센터(청소년수련관)	이천시 영창로 260(창전동)
2. 청소년상담복지센터	이천시 영창로 260(창전동)
3. 창전청소년문화의 집	이천시 영창로163번길 28(창전동)
4. 부발청소년문화의 집	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21
5. 청미청소년문화의 집	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57
6. 여자단기청소년쉼터	이천시 영창로227번길 28, 111호
7. 교육협력지원센터	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306